

의안번호	2217081
의 퇴 인	윤영석의원
회 답 일	2026.8.25.
추계번호	26D1144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3조 (양로·요양 지원)	국가유공자나 그 유족(자녀는 제외한다)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(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성은 60세 이상,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) 중 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없는 자(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양로·요양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음.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·요양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2	안 제65조 (양로·요양 지원 등의 위탁)	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·요양지원과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·노인의료복지시설·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음(제1항) 양로·요양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(제2항)	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63조(양로·요양지원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5조(양로·요양지원 등의 위탁)	

2. 상세사유

-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에게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또한,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이 필요할 경우,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현재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수원 보훈원에서 양로지원을 하고 있음

[표 1] 수원보훈원(양로시설) 입소 현황

(단위: 명)

성별	정원	현원	본인							유족			
			소계	독립	국가	5.18	특수	고엽제	참전	소계	배우자	부모	(손)자녀
남	215	40	36	1	22	—	—	2	11	4	—	1	3
여		60	3	—	—	—	—	—	3	57	54	1	2
계		100	39	1	22	—	—	2	14	61	54	2	5

자료: 국가보훈부

- 또한,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, 부모에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[표 2]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지급대상별 요양지원보조 비율

보훈대상자	지급대상	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조비율
○ 독립유공자 ○ 전상·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○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○ 특수임무부상자	○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자 ○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○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	80%
○ 무공·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공로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○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○ 특수임무공로자 ○ 독립·국가·5·18민주·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(참전유공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) ○ 국가·5·18민주·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 부모	○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자 ○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○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	40%
○ 참전유공자 ○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	○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○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	60%

자료: 국가보훈부

-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양로·요양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, 지원 시설 대상을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양로·요양시설로 확대하였음
 - 또한, 개정안은 지원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추가하고, 요양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요양지원을 할 경우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요양시설이나 위탁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요양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요양지원 대상자의 수, 대상자 중 요양지원을 받을 사람의 비율 및 지원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부재하여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에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